

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18. . .
발 의 자	김재우의원 외 4명

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재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	
번호	

발의연월일 : 2018. . .

발 의 자 : 김재우·김택호·신문식·이지연
최경동 의원(5인)

1. 제안이유

근로자임대아파트의 임대허가 제한 범위를 완화하여 모자가족인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(안 제5조)

- 현행 :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
- 개정 :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

나. 임대허가 제한 범위 완화(안 제7조)

- 모자가족의 경우 자녀 동반 입주 가능

다. 상위 법령에 따른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9조)

라.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 정비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2조부터 제5조까지, 제7조 및 제9조
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6조까지,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
3조까지로 하며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1. “사업장”이란 구미시 관내에서 사업자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
로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.
2. “근로자”란 사업장에서 월 단위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받는 여
성 근로자를 말한다.
3. “모자가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가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3호에 따른 가족
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같
은 법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가족

제5조(종전의 제4조) 본문 중 “만18세 이상의 여성”을 “여성”으로 한다.

제6조(종전의 제5조) 중 “임대 사용하고자”를 “사용하고자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임대허가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
대하여는 임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1. 본인 이외의 타인을 동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. 다만, 모자가족
의 경우에는 자녀가 동반하여 입주할 수 있다.

2. 감염병 또는 정신질환자

3. 제8조 각 호에 따라 임대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제8조(중전의 제7조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문란을 하게”를 “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는 등 다른 입주자와의 공동생활에 현저하게 부적합한 자

제8조(중전의 제7조)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임대료등 납부 및 환불)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별표에 정한 임대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중전의 제10조)제2항 중 “전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2조(중전의 제11조) 중 “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1조에 따라”로,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3조(중전의 제12조) 중 “조례 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조례의 시행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</u> <u>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</u> <u>1. “사업장”이란 구미시 관내에</u> <u>서 사업자가 1명 이상의 근로</u> <u>자를 상시로 고용하여 사업을</u> <u>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.</u> <u>2. “근로자”란 사업장에서 월 단</u> <u>위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</u> <u>받는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.</u> <u>3. “모자가족”이란 다음 각 목의</u> <u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</u> <u>말한다.</u> <u>가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</u> <u>4조제3호에 따른 가족</u> <u>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</u> <u>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</u> <u>대상자 중 같은 법 제4조</u> <u>제3호에 해당하는 가족</u>
<u>제2조 · 제3조 (생 략)</u>	<u>제3조 · 제4조 (현행 제2조 및 제3</u> <u>조와 같음)</u>
<u>제4조(임주대상자) 임대아파트 임</u> <u>주대상자는 구미시 관내 사업장</u> <u>에 근무하는 만18세 이상의 여</u> <u>성 근로자(이하 “근로자”라 한</u>	<u>제5조(임주대상자) -----</u> ----- ----- <u>여성</u> ----- -----

다)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입주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임대허가) 임대아파트를 임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임대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임대허가 제한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1. 본인 이외의 타인을 동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
2.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
3.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
<신 설>

-----.

-----.

제6조(임대허가) ----- 사용하고자 -----
-----.

<삭 제>

제7조(임대허가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1. 본인 이외의 타인을 동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. 다만, 모자가족의 경우에는 자녀가 동반하여 입주할 수 있다.
2. 감염병 또는 정신질환자

제7조(임대허가 취소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시설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거나 풍기문란을 하게 한 자

4.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자

5. 6. (생략)

7. 시장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

8. 기타 임대아파트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

제8조(임대료등 납부 및 환불)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[별표]에 정한 임대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이미 납부한 임대료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

3. 제8조 각 호에 따라 임대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
제8조(임대허가 취소) -----

-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-----

4.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는 등 다른 입주자와의 공동생활에 현저하게 부적합한 자

5. 6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7. 그 밖에 -----

<삭 제>

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신 설>

제9조 (생 략)

제10조(위탁관리) ① (생 략)

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아파트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시설관리, 수탁자책임,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

제11조(보조사업) 제10조의 규정
에 의하여 임대아파트를 위탁운영 관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
내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임대료등 납부 및 환불) 임
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별표에
정한 임대료등을 납부하여야 한
다.

제10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

제11조(위탁관리) ① (현행과 같
음)

②제1항에 따라 -----

----- 그 밖의 ----

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보조사업) 제11조에 따라

----- 범위-

-----.

제13조(시행규칙) -- 조례의 시행
에 -----
-----.

관계법령

□ 「근로복지기본법」

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"근로복지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사업주(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노동조합(지부·분회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·사업주·노동조합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제2조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4. 12., 2014. 1. 21., 2018. 1. 16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

예방하고,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 3. 22., 2016. 12. 20.>

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12. 20.>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1. 21., 2016. 12. 20.>

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

제4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4. 12., 2012. 2. 1., 2014. 1. 21.>

1. "모" 또는 "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(遺棄)된 자

나.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

다. 교정시설·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

라. 미혼자{ 사실혼(事實婚)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}

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

- 1의2. "청소년 한부모"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.
2. "한부모가족"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.
3. "모자가족"이란 모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(世代員)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4. "부자가족"이란 부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5. "아동"이란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,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)의 자를 말한다.
6. "지원기관"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7. "한부모가족복지단체"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
제5조의2(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)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. <개정 2011. 4. 12., 2014. 1. 21., 2018. 1. 16.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4. 12., 2014. 1. 21.>

1.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

2.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·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
 3.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
 4.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
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
-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